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 지방의회 세미나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전략과 발전방향

일시 2022. 4. 15.(금) 14:00

장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략회의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LID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 지방의회 세미나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전략과 발전방향

인사 말씀

1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주제 발표

발표 1: 자치분권2.0시대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방안 연구

7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교수

발표 2: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진단 필요성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23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디지털 지방의회 세미나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전략과 발전방향

인사 말씀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이재영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길목에서 지방의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금일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금일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원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걸음 해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님, 지방자치학회 소순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본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인 지식공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원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위택스, 문서24 등 디지털 지방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명정보결합기관, 데이터기반행정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와 관련해 지난해에 우리 원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분권 2.0시대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지자체 의회와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거시적 방향을 모색하고,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우리 원과 지방행정연구원의 디지털 지방의회 구축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오늘의 논의 주제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지방의회 로드맵 구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와 공동개최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5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입니다.

오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전략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디지털 지방의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참여 확대 등 지방의회 운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보 및 데이터 기반 지방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전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관한 풍부한 연구경험 및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 저희 연구원과 지역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보유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으로 향후 디지털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 등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정아카데미, 지방의정 브리프 등 다양한 지방의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방의회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지방의회 구축전략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세미나의 발제를 맡아주신 임태훈 고려대학교 교수님과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좌장이신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찬우 금강대학교 교수님, 이윤진 서원대학교 교수님,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님, 이종구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구원에서도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향후 디지털 지방의회 구축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지방의회로의 환경 변화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향후 디지털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에 도움을 주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재영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 일 재

디지털 지방의회 세미나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전략과 발전방향

발표 1

**자치분권2.0시대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방안 연구**

임 태 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교수

자치분권 2.0 시대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의 필요성과 방향

2022. 4. 15. (금)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임 태 훈

발 표 순 서

- ❖ 배경 및 필요성
- ❖ 지방의회 시스템 현황
- ❖ 디지털 지방의회 시스템 구현 방향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의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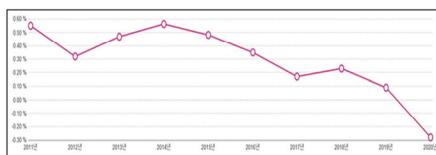
구분	현행	개정
사무직원 인사권	• 의회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에 부여	• 의회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 규정없음	•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신설
의회 운영방식	• 회의운영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 법에 규정	• 의회 운영을 조례로 위임해 지역별로 정하도록 자율화
의원 겸직금지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등	•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지방의회 윤리심사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등
의정 활동 투명성	• 의회 표결 방법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기록 표결 제도 원칙 도입
정보 공개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 방법 등 미규정	•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 공개 의무 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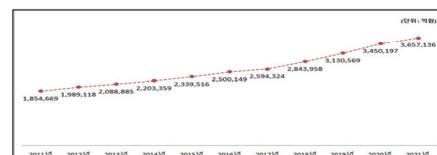
지방의회의 기능과 정책 환경

◆ 정책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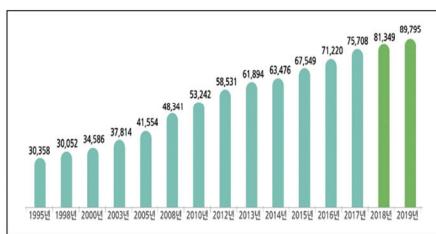
❖ 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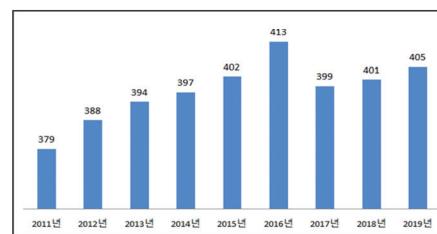
❖ 지방재정 증가



❖ 지방자치단체 조례 증가



❖ 지방 출자출연기관/공기업 증가



4

지방의회 변화 방향과 정보시스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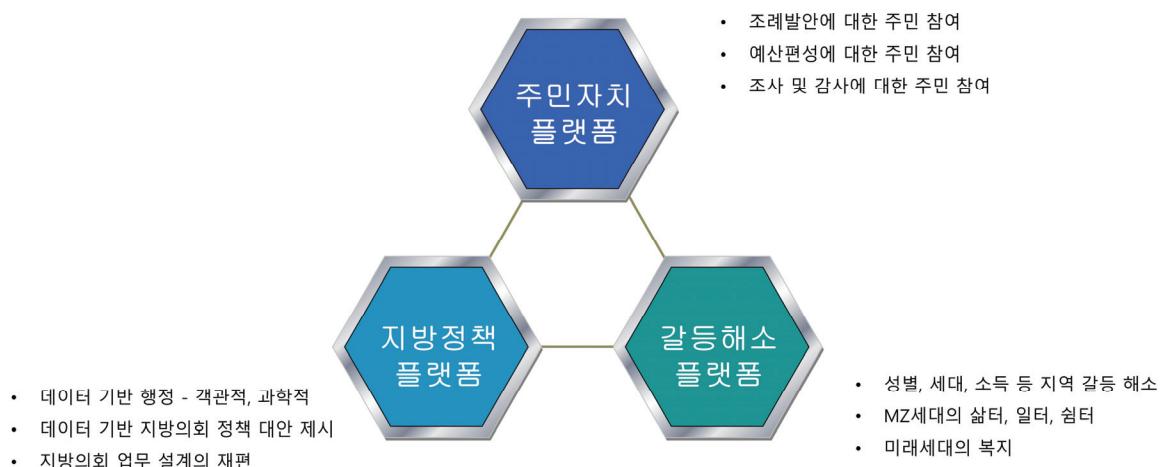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구 분	기 능
1 홈페이지	• 온라인 접근 채널 및 서비스 연결 게이트
2 회의 영상 중계	•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 실시간 중계서비스
3 본회의장 및 전광판 영상 표출	• 본회의장 전광판 및 전광판에 카메라영상, PPT등 송출
4 의안 처리	• 의원 의안 발의, 연서(찬성, 공동발의), 의안제출 전자화
5 의정 플러스	• 의원 업무 포털사이트
6 의정 활동 지원	• 의원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답변
7 입법 조사 회답	• 의원 발의 지원(의안, 법률자문, 전문정보 등) 요청 및 회답
8 비용 추계	• 비용추계, 조사분석 요청 및 회답, 접수된 비용추계 진행 상황 확인 등 •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DB구축 및 통계 검색

5

지방의회 변화 방향과 정보시스템 필요성

◆ 변화 방향



6

발 표 순서

❖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의회 시스템 현황

❖ 디지털 지방의회 시스템 구현 방향

7

국회 정보시스템 현황

의정지원 정보시스템	대국민 정보시스템	행정지원 정보시스템
1. 디지털 본회의장시스템	1. 의안정보시스템	1. 인적자원관리시스템
2. 입안지원시스템	2. 예산결산정보시스템	2. 선자문서시스템
3. 법제지원시스템	3. 국정감사정보시스템	3. 국회메일시스템
4. e-의안시스템	4. 법률지식정보시스템	4. 인증관리시스템
5. 위원회 회의지원시스템	5. 국회회의록시스템	5. 시설물예약·관용차량 관리시스템
6. 영상회의시스템	6.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6. 공무원증·출입증관리 시스템
7.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7. 국회입법예고시스템	7. 국회출입기자관리시스템
8.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8. 국회정보공개·행정심판 시스템	8. 국회채용시스템
9. 국회의원 호스팅시스템	9.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9. 국회관계법규시스템
10.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10. 국회 관련 홈페이지 11.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12. 국회온라인미디어시스템 13. 국회모바일서비스 14. 국회미디어자료관 15. 그 밖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10. 국회전자자료실·교육 훈련교재시스템 11. 디지털발간시스템 12. 의회외교정보시스템 13. 국회민원상담관리시스템 14. 국회정보기술아키텍처 15. 국회정보자원통합관리 시스템 16. 데이터표준관리시스템

8

국회 정보시스템 현황

◆ 국회 의정지원시스템

- ❖ 법률안의 발의, 검토, 심사, 찬성 및 서명, 철회 등 업무 지원



9

국회 정보시스템 현황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 ❖ 법률안 심사 전,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의견 취합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 ❖ 국가법률정보 조회 및 검색, 관련 자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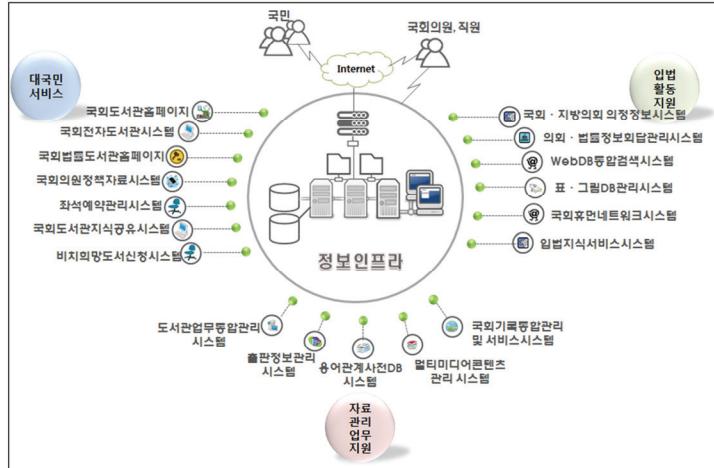
10

13

국회 정보시스템 현황

◆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 ❖ 입법 활동 지원, 대국민 서비스, 자료 관리 업무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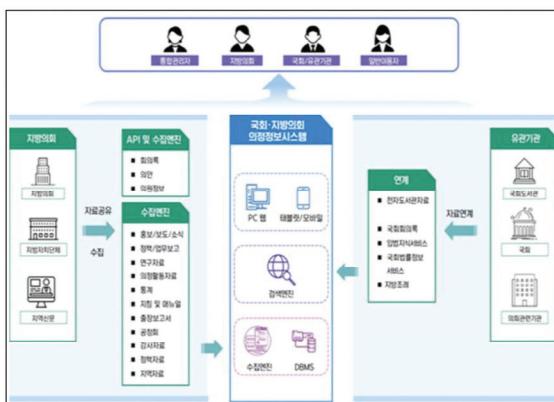


11

국회 정보시스템 현황

◆ 국회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 ❖ 국회도서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 정보 교류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서비스

지방의회 회안정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 최근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 후기 | ⌂ 회원가입

국회의회정보 | 지방의회의회정보 | 자치법규·법률정보 | 경제정보 | 지역용정보 | 의원현황 | 이용안내 | ⌂

지방의회의회정보

의회

기관으로	개인으로
서울특별시(1,230)	서울특별시회원(1,230)
부산광역시(600)	부산광역시회원(600)
인천광역시(610)	인천광역시회원(610)
대구광역시(580)	대구광역시회원(580)
경상북도(570)	경상북도회원(570)
경상남도(560)	경상남도회원(560)
제주도(550)	제주도회원(550)
광주광역시(540)	광주광역시회원(540)
대전광역시(530)	대전광역시회원(530)
충청북도(520)	충청북도회원(520)
충청남도(510)	충청남도회원(510)
경기도(500)	경기도회원(500)
부산광역시(490)	부산광역시회원(490)
광주광역시(480)	광주광역시회원(480)
대구광역시(470)	대구광역시회원(470)
경상북도(460)	경상북도회원(460)
경상남도(450)	경상남도회원(450)
제주도(440)	제주도회원(440)
광주광역시(430)	광주광역시회원(430)
대전광역시(420)	대전광역시회원(420)
충청북도(410)	충청북도회원(410)
충청남도(400)	충청남도회원(400)
경기도(390)	경기도회원(390)
부산광역시(380)	부산광역시회원(380)
광주광역시(370)	광주광역시회원(370)
대구광역시(360)	대구광역시회원(360)
경상북도(350)	경상북도회원(350)
경상남도(340)	경상남도회원(340)
제주도(330)	제주도회원(330)
광주광역시(320)	광주광역시회원(320)
대전광역시(310)	대전광역시회원(310)
충청북도(300)	충청북도회원(300)
충청남도(290)	충청남도회원(290)
경기도(280)	경기도회원(280)
부산광역시(270)	부산광역시회원(270)
광주광역시(260)	광주광역시회원(260)
대구광역시(250)	대구광역시회원(250)
경상북도(240)	경상북도회원(240)
경상남도(230)	경상남도회원(230)
제주도(220)	제주도회원(220)

제안일 2021.11.13 **제안자** 증구청장
✓ 소관위원회회명 : 행정 보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실무경과

소관위원회회정보

본회의경과	최초발의자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20.11.20	2020.12.08	2020.12.08	2020.12.08	2020.12.08	원안가결

본회의경과

본회의경과	최초발의자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20.12.18	2020.12.18	2020.12.18	2020.12.18	2020.12.18	원안가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_충구_지방공무원_복무조례_일부개정조례안
제이번호 CJKC2775465593699623

제이번호 CJKC2775465593699623 | **다음** | **목록** | **제이번호** | **페이지** 1/1 | **환경설계**

12

지방의회 정보시스템 현황

◆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시스템 현황

번호	현행정보시스템명	운영부서	접속 url
1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http://smc.seoul.kr
2	아카이브 시스템		http://cms.smc.seoul.kr
3	의정포털 시스템		내부시스템
4	모바일시의회		http://m.smc.seoul.kr
5	전자회의시스템		내부시스템
6	회의록시스템		http://ms.smc.seoul.kr
7	의회신문고시스템	시민권의담당관	http://m.u-sinmungo.smc.seoul.kr
8	스마트전자도서관시스템	입법담당관	http://library.smc.seoul.kr
9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예산정책담당관	http://rps.smc.seoul.kr
10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의사담당관	내부시스템
11	입법조사 회답시스템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내부시스템
12	의안처리시스템	의사담당관	내부시스템

13

지방의회 정보시스템 현황

◆ 서울특별시 의정 정보시스템 (의정플러스)



◆ 경기도 의정포털시스템



◆ 인천광역시 의정한올네트워크



◆ 광주광역시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14

15

발 표 순서

- ❖ 배경 및 필요성
- ❖ 지방의회 시스템 현황
- ❖ 디지털 지방의회 시스템 구현 방향

15

구현 방안

◆ 공공 및 민간 협력 추진

공적 영역의 기관 활용

- 의회 행정업무 : 독립 시스템 구축시 비용 대비 효과 저조
- 집행부의 행정시스템 활용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고려한 정보자원(데이터)의 물리적 분리
- 집행부와 독립적 위치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사업에 연계한 견제 기능 중심의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 활성화

- 현재 국민의 전화 또는 의회 방문(대면) 방식으로 의견 전달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 참여의 기회 확대
- 시스템을 통한 제안, 투표, 공통 주제 설정, 투명한 제안 채택 등 표준화된 절차의 구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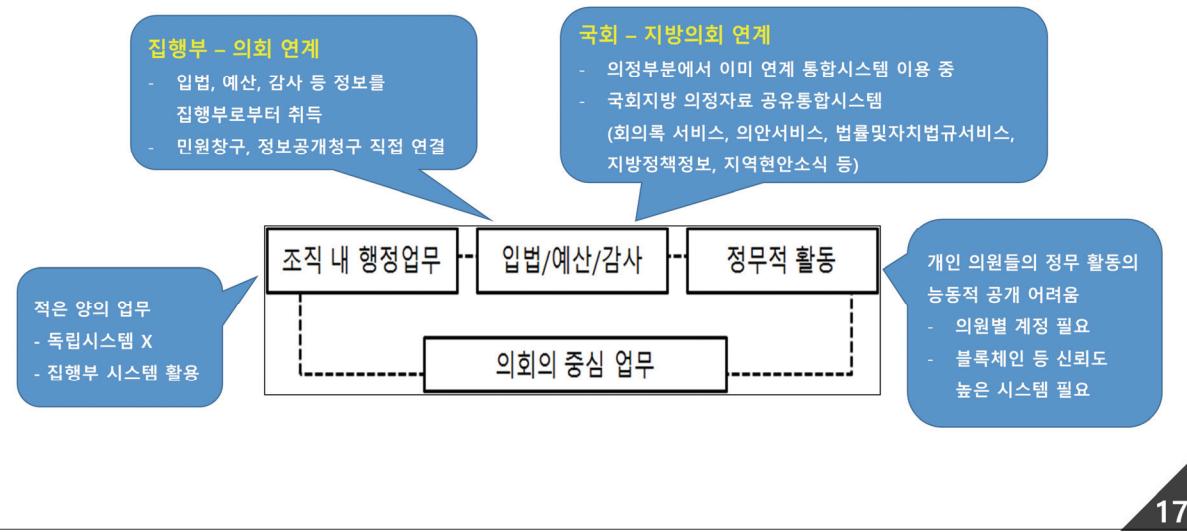
민간 협력 추진

- 공공의 자체 개발 보다는 시장의 민간기업의 서비스 활용 (예 : 챗봇, SNS)
- 공공의 연간 이용료 지급 방식
- 자연어 처리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 지능 서비스 활용

16

구현 방안

◆ 의정 활동과 행정 업무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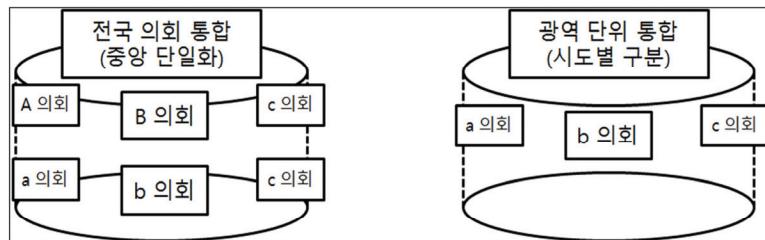


17

구현 방안

◆ 지방의회 정보시스템 독립 추진의 한계

- ❖ 현재 의회의 정보자원은 주로 발간물 및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
→ 정책 활용을 위한 가치 ↓
- ❖ 의회 자료를 가공, 생산하는 주체가 집행부 공무원 → 정책 도출의 가능성 ↓
- ❖ 예산과 조직의 한계로 집행부와 독립적인 공적 조직 활용 필요
- ❖ 전국 의회 통합 모형 vs 광역 단위 통합 모형



18

구현 방안

◆ 지방의회의 의정 기능 중심 정보체계 구축

- ❖ 행정 업무는 현 집행부의 시스템을 변경하여 활용
- ❖ 단,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보자원을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독립 공간 마련
- ❖ “표준 의정시스템 (공통 의정 기능) + 추가 기능”的 확장
- ❖ 효율성 vs 독립성

	효율성 중심의 정보체계 구축	독립성 확보 중심의 정보체계 구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과 조직 투자 따른 어려움 최소화 및 효율성 확보 • 단시간 내 지방의회의 정보체계 기본기능 구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 명시적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시스템 구축 가능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 업무 시스템 개선 연계 활용 • 집행부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운영·관리 주체 필요 • 표준형태의 시스템 구축으로 공통 업무에 대한 대응 및 확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과 인력의 단시간 내 집중투자가 없으면, 정보 체계 확보가 늦어질 수 있음 • 별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필요기관과의 연계시스템 별도 구축 및 소통채널 확보를 위한 추가 자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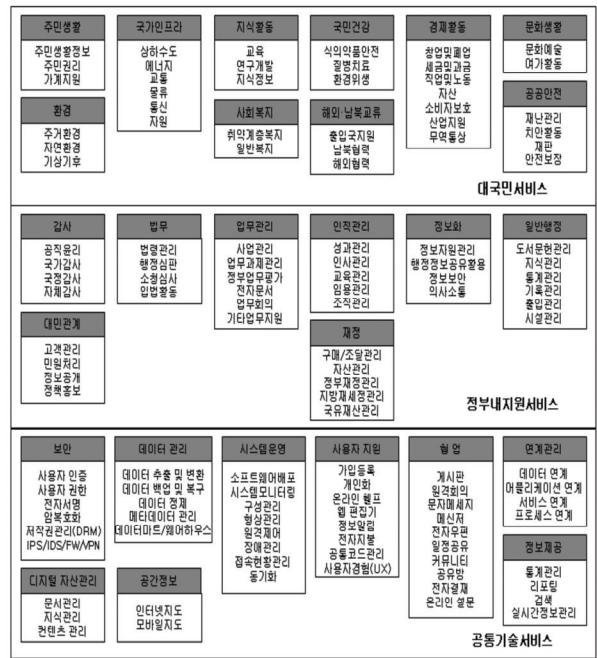
19

구현 방안

◆ 법정부 참조 모델 활용

- ❖ Service Reference Model
- ❖ Technic Reference Model
- ❖ Data Reference Model

GEAP 법정부 EA 모델



20

구현 방안

◆ 법정부 참조 모델 활용

- ❖ Service Reference Model
- ❖ Technic Reference Model
- ❖ Data Reference Model

GEAP 법정부 EA 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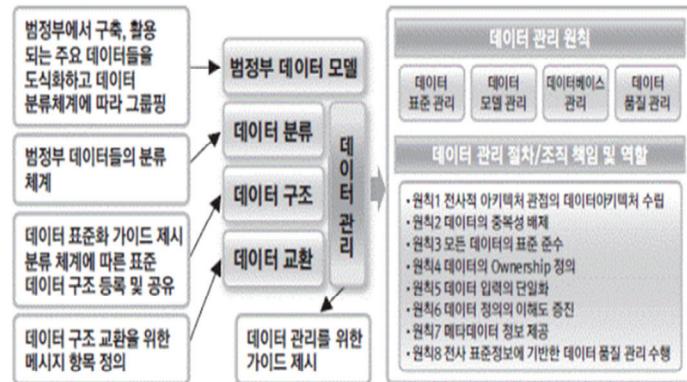
21

구현 방안

◆ 법정부 참조 모델 활용

- ❖ Service Reference Model
- ❖ Technic Reference Model
- ❖ Data Referenc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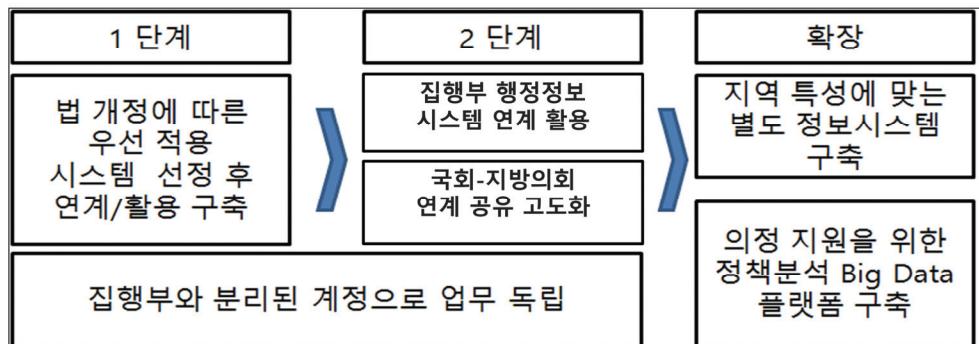
GEAP 법정부 EA 포털



22

구현 방안

◆ 추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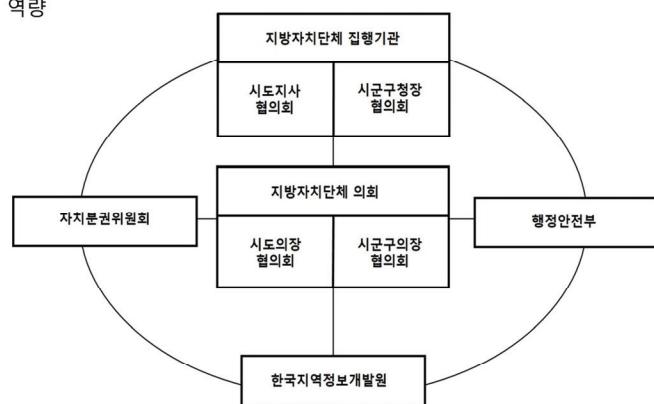


23

구현 방안

◆ 지방의회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 방안

- ❖ 지자체 행정업무 추진 공통기반 운영 전담 (노하우)
- ❖ 지자체 사무 전반에 대한 활용 지원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용이
- ❖ 지자체 정보화전략계획 및 컨설팅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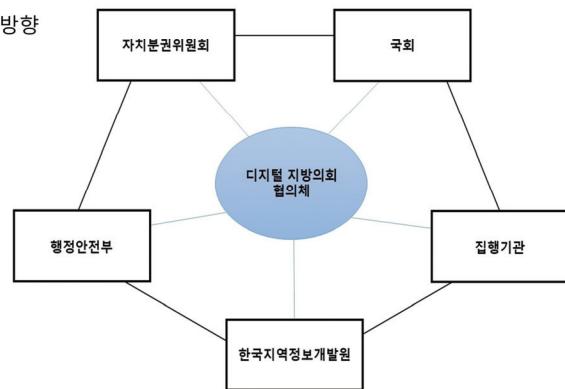


24

구현 방안

◆ 디지털 지방자치 활성화 협력 체계

- ❖ 중앙부처, 국회, 지방의회, 자치단체 간 협력 채널
- ❖ 집행과 감시 기능의 조정 및 협력 → 디지털 기반 표준 업무 공감대
- ❖ 우수 정보시스템 사례 공유 및 공동 활용
- ❖ 디지털 지방자치 예산 지원 및 중장기 협력 방향



25

감사합니다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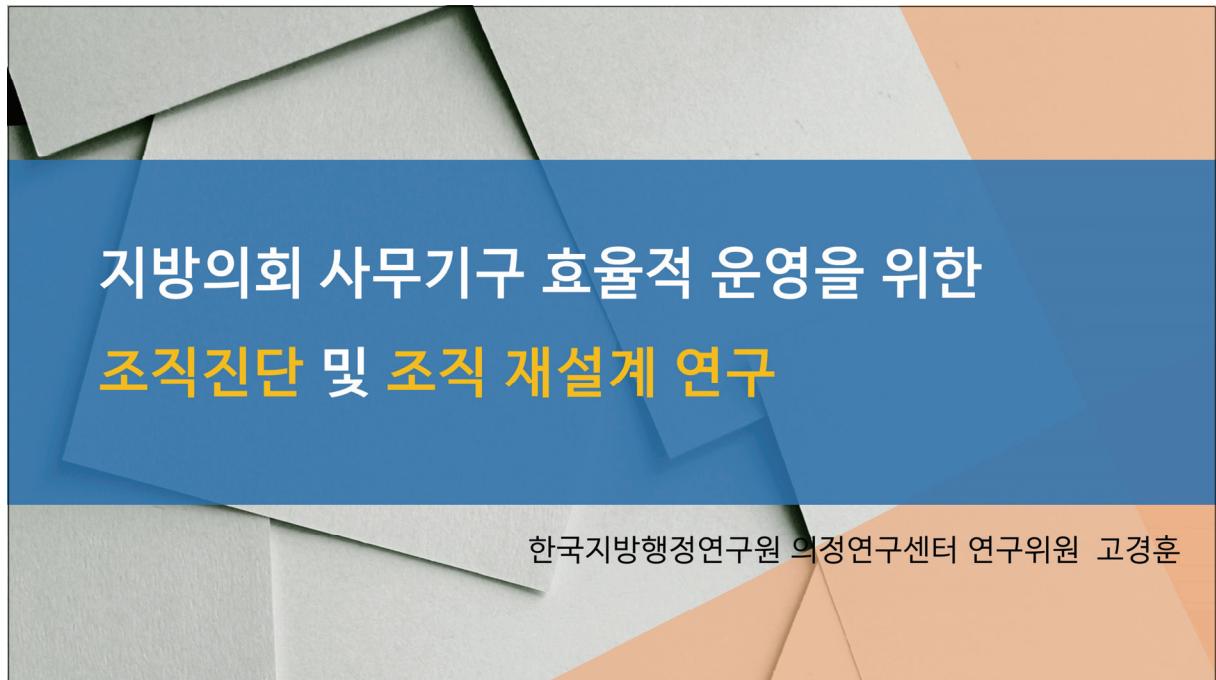
디지털 지방의회 세미나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전략과 발전방향

발표 2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진단 필요성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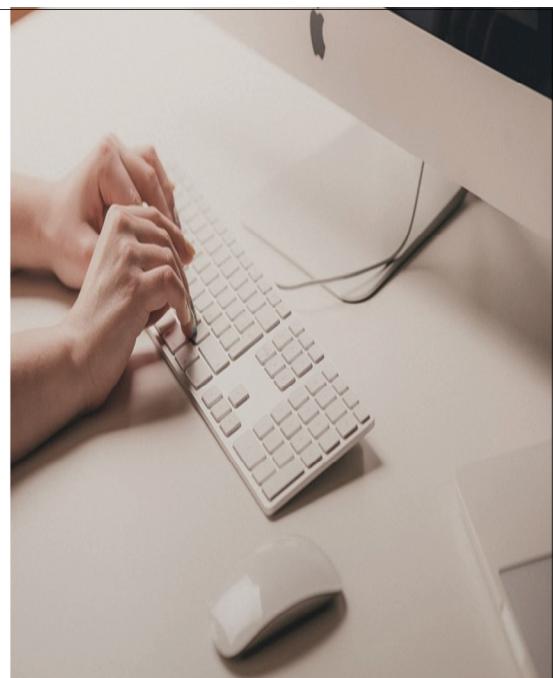
고 경 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C ontents

- I 서론
-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 III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증 분석
-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재설계 전략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연구 배경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 지방자치는 제헌헌법 제96조와 제97조에 규정됨으로서 국가운용 시스템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5.16 이후 지방자치는 단절되었음
- 근 30년 만인 1991년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대내외 여건 변화, 행정의 역할 확대에 따른 견제기능으로 의회의 역할 확대

- 21세기 글로벌화, 지방화, 정보화 등의 자치환경의 급진적 변화로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지방행정환경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할 확대
- 위임된 권한을 기초로 지역주민의 대표기능, 입법기능,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도달

I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연구 배경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다양한 의회의 기능 확대 및 책임성 부여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의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실행계획 마련 필요
- 특히 의사사무과가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적극적인 조직 대응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

구분	현행	개정	
권한 강화	사무직원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부여(단, 임용권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 규정없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제103조)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제41조)
	의회 운영 방식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 법에 상세 규정	의회 운영을 조례로 위임해 지역별로 정하도록 자율화(제5장)
	의원 겸직금지 지방의회 윤리심사 의정활동 투명성 정보공개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등 윤리특위 설치 임의 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의회 표결방법 원칙 관련 근거 미비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 방법 등 미규정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등(제43조)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제65조),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등(제66조)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제74조)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 공개 의무 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제26조)
책임 강화	의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또 하나의 기능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행정의 기초가 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행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집행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수행 ▪ 국가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지방의회가 수행 ▪ 지방의회 역시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을 가지고 있으나 감시, 견제 등을 포함 적절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한 일련 의 강화가 필요	
	지방의회의 권한 제한, 집행부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 권한과 활동이 지방정부에 제한, 국회의원에 종속되는 문제 제기 ▪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인사,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동등한 지위 확보에 어려움	

I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연구 배경

국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또 하나의 기능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행정의 기초가 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행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집행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수행
- 국가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지방의회가 수행
- 지방의회 역시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을 가지고 있으나 감시, 견제 등을 포함 적절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한 일련
의 강화가 필요

지방의회의 권한 제한, 집행부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 권한과 활동이 지방정부에 제한, 국회의원에 종속되는 문제 제기
-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인사,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동등한 지위 확보에 어려움

I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 연구 목적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 도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 운영 방안 도출

조직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방안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파악 등을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공 방안 도출

적정 기능 도출 및 구조개선

국회 의정지원 조직과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의회 의정지원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위상강화 대안도출

»» 지방의회 출범 30주년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위상 강화 방안** 도출

»» 디지털 지방의회 도입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 방안 모색

I . 서론

2. 연구 내용

1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법령 개정 진행사항 분석

현재 의회사무기구는 지역의 실정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중앙통제적인 방식으로 조직 및 인사제도를 설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 모색

- 현재 의회사무기구 조직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1994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이후 '시행규칙'이 '규정'으로 변경),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전면적인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 국장(4급) 밑에 중간관리층이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형태와 집행부와의 불균형적인 정원·직급 책정기준 유지
- 시·도의회 사무처장은 서울만이 1급, 16개 의회는 2,3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처에 3급 공무원이 부재한 의회가 많아 4급들의 승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의회의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수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
-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지원조직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펼치기에는 한계

2. 연구 내용

I . 서론

2 시도 의회사무처와 국회의정지원조직 운영비교(조직/인사)

1) 조직 및 인사 측면에서 16개 시도 의회사무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현재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하는 한편,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 가령 서울특별시의 경우 1급 사무처장 계선으로 4급 담당관 체계로 이루어짐으로써 서울시 집행기관의 실국장, 정책관과 같은 3급 단위의 직위체계가 결여되어 조직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경기도의 경우, 2급 사무처장 아래 4급 담당관 체계로 이루어짐으로써 경기도 집행기관의 실국장, 정책관 등과 같은 3급 단위의 직위체계가 결여되어 조직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4급으로 보하나 의장비서실장은 5급으로 보하여 기관 간 위상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여러 실국 및 교육청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직급기준이 4, 5급체계로 규정되어 집행기관과 형평성 문제

2. 연구 내용

I . 서론

2 시도 의회사무처와 국회의정지원조직 운영비교(조직/인사)

2) 국회의정지원조직 및 인사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력의 개편방안 등 모색

- 현재 국회사무처는 1인 사무총장 아래에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 보좌
 - 입법차장은 입법소관업무를 총괄하며 법제실, 의사국, 방송국, 경호기획관,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을 지휘·감독,
 - 사무차장은 사무처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기획조정실, 국제국, 관리국, 의정연수원, 인사과, 운영지원과 지휘·감독
 - 홍보기획관과 감사관은 사무총장이 직접 지휘·감독함
-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권을 가지며,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행정감시권을 가지므로 적절한 권한의 행사가 수행되려면 국회의원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제공하여, 지방의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

I . 서론

2. 연구 내용

3 국회의정지원조직을 토대로 지방의회 조직·인력 운영방안 및 관련법령 개정방안 도출

1) 시도 실정에 맞은 조직 확대 및 개편 방향 도출

- 단순하고 획일적인 지방의원 정수에 의한 의회사무기구 대신 행정규모, 재정자립도, 의원 정수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과 다양성·자율성을 고려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설계,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지향
- 국회와 비교했을 때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별도의 '지방의회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성 검토

2)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기능 강화

- 국회의 의정지원시스템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 지원이 의회사무처 단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의원보좌진이라는 개인적 보좌 및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회사무처에 행정인력과 전문인력을 두고 있으나 체계적인 의정지원 활동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보좌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문인력 확충에 한계 노정
- 따라서 지방의원 1인 1인 보좌관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정방안 제시하는 등 개인 차원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방안 마련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 지방자치법의 개정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 |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 지방의회의 헌법적 근거

-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기구로,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지방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정해 두고, 특히 집행기관의 장인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5장(지방자치법 제30조~제92조)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의원, 권한, 소집과 회기,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회의, 정원,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임사, 결사, 징계, 사무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의 운영원리

대한민국 헌법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둈다'
2항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조직,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운영
사항은 법률로 규정 사항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
최고의사결정기관,
행정조사 및 감사기관

↔

자치단체장을
의회결정사항 및 정책의
집행기관, 피감사기관

자료: 안영호(2013: ?)
견제와 균형의 원칙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 |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 이처럼 헌법에 근거를 둔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 조례의 제정 등자치입법기능,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과 결산기능,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추진기능,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기능 등을 담당하는 등 그 법적 지위와 실제적인 기능이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기능	법적 근거
주민 대표기관	지방자치법 제31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규정에서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
의결기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근거하여 의결기능 행사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 규정, 제108조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규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는 사안에 대하여 제한된 의결권 행사
입법기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규정에 근거
감시기관	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사하는 감시기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규정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조직-사무기구		
<p>▪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의 일반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지방의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무조직으로서 지방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 기관임(이관행, 2020: 179)</p> <p>❖ 의회 사무기구의 8대 기능</p> <pre> graph LR A[사무처리] --> B[조직유지 의회운영 기능유지 여론수렴] A --> C[입법지원 정책지원 조사분석 역량강화] B --> D[인사관리, 회계·경리, 각종 시설물 관리, 문서처리, 인쇄작업, 우편을 발송, 사무실 배정, 대외관계 등] B --> E[위원회 구성·배치, 의원연구단체 운영, 의사진행, 회의록 작성, 전문위원·정책지원 전문인력제 운영, 조직발전 등] B --> F[자치법규 입법, 예·결산 심의 확정, 집행기관 행정사무 및 정책사항 평가, 교육자치 관련업무, 각종 의결권 행사 등] B --> G[집단민원 처리, 청원처리, 민원현장 확인, SNS 민원 처리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 등] C --> H[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자치법규 입법지원, 법령 개선 건의안, 해외 지방자치법규 동향 파악 등] C --> I[집행기관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 의회 결의안, 통의안 지원 등] C --> J[의안의 조사 및 분석, 각종 영향평가 분석, 자치법규 및 예·결산 자료조사 및 분석, 의원요청사항 분석 등] C --> K[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의 역할역량 및 기능 강화 연수, 의원경력도 증진 등] </pre>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조직-사무기구														
<p>❖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방자치법 규정</th> <th>특 징</th> </tr> </thead> <tbody> <tr> <td>1988. 4. 6. 전부개정, 법률 제4004호</td> <td> 제82조(사무국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간사 및 직원(이하 이 항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td> <td>- 시·도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기초의회에는 사무기구를 두고 있지 않음)</td> </tr> <tr> <td>1991.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4464호</td> <td>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항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td> <td>-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내부조직으로서 사무기구 지원체계 구성</td> </tr> <tr> <td>2007. 5. 11. 전부개정, 법률 제8423호</td> <td>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항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td> <td>-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내용 변화 없음, 현행)</td> </tr> </tbody> </table>			구 분	지방자치법 규정	특 징	1988. 4. 6. 전부개정, 법률 제4004호	제82조(사무국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간사 및 직원(이하 이 항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시·도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기초의회에는 사무기구를 두고 있지 않음)	1991.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4464호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항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내부조직으로서 사무기구 지원체계 구성	2007. 5. 11. 전부개정, 법률 제8423호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항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내용 변화 없음, 현행)
구 분	지방자치법 규정	특 징												
1988. 4. 6. 전부개정, 법률 제4004호	제82조(사무국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간사 및 직원(이하 이 항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시·도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기초의회에는 사무기구를 두고 있지 않음)												
1991. 12. 31. 일부개정, 법률 제4464호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항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내부조직으로서 사무기구 지원체계 구성												
2007. 5. 11. 전부개정, 법률 제8423호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항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내용 변화 없음, 현행)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 | 지방의회의 조직-사무기구

-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기구공무원의 직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음

❖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공무원 직급기준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기타 광역·특별자치시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	4급 일반직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 | 지방의회의 조직-사무기구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구분	지방자치법	특징
1988. 4. 6. 전부개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1994. 3. 16. 일부개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협의권이 추천권으로 변경
2006. 4. 28. 일부개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
2007. 5. 11. 전부개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조항은 동법 제91조로 조문 변경 -내용 변화 없음
2012. 12. 11. 타법개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별정직에 통합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개정
2013. 7. 16. 일부개정 (현행)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되면서, 지방의회는 기존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개정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 | 지방의회의 조직-상임위원회

❖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의의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위원회가 의안심의의 중심이 되는 위원회 중심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음
- 지방의회는 거의 모든 활동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 의회의 기능이 바로 상임위원회의 기능이라 볼 수 있음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한 의안과 청원, 기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설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임
- 상임위원회는 일정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 본회의 의결에 앞서 회부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입안하여 본회의 의결에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회의 의결을 신속하게 만드는 합의제 회의체임

❖ 상임위원회의 기능

- 효율적·전문적 의회 운영을 위한 예비심사의 기능 수행
 -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안건은 상임위 단계에서 폐기
-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사기능 수행
 - 본회의와 관계없이 자주적 심사권을 가지며 상임위원회 스스로 의안 제출이 가능(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안은 큰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가결,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사실상 상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임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2 | 지방의회의 조직-상임위원회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조직의 법적 근거

- 총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자치구 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수에 따라 상임위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특별위원회 제도만 운영, 2006년 지방자치법을 개정, 시·도의회와 기초의회의 구분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자율화
-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몇 개 설치할 것인가,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해당 지방의회의 자율에 의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임

구분	지방자치법의 내용
위원회 설치	<p>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p>
위원회의 조직	<p>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p> <p>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2 | 지방의회의 조직-상임위원회**

- 다면, 실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및 [별표5]에서 시·도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정수	5급	6급 이하
2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30명 이하	7명 이내	6명	1명
40명 이하	9명 이내	7명	2명
50명 이하	11명 이내	7명	4명
60명 이하	13명 이내	8명	5명
80명 이하	16명 이내	8명	8명
100명 이하	18명 이내	9명	9명
11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20명 이하	22명 이내	12명	10명
130명 이하	23명 이내	12명	11명
131명 이상	24명 이내	13명	11명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1. 현행법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2 | 지방의회의 조직-상임위원회**

(참고) 시·군·자치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정수	6급	7급 이하
7명 이하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5명 이하	7명 이내	4명	3명
40명 이하	8명 이내	4명	4명
45명 이하	9명 이내	5명	4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5명	5명
51명 이상	11명 이내	6명	5명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2. 지방자치법의 개정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1 |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의의

❖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

-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

❖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울러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사항의 하나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성, 실효성 강화에 관한 직·간접적 제도개선 노력도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제5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제41조), 지방의원 겸직금지규정의 명확화(제43조),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제65조),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제74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2. 지방자치법의 개정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2 | 지방의회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권한강화	사무직원의 인사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에 부여(단, 임용권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 위임)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규정 없음
	의회 운영방식	의회 운영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 법에 상세 규정
책임강화	의원 겸직금지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겸직신고 내영 외부 미공개 등
	지방의회 윤리심사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의정활동 투명성	의회 표결방법 원칙 관련 근거 미비
	정보공개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미규정

자료: 하혜영(2021. 3.)

2 지방의회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참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의 규정 변화					
구 분 현 행 개 정 주요변화					
사무직원의 인사권	<p>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p>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 등을 시·도 및 기초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규정 없음	<p>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두 수 있다. ② 동조 제2항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근거 마련, 입법·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 - 인력 규모는 의원 정수의 ½ 이내 (22년 ¼내 → 23년까지 ½ 내로 연차적 확대) 		

2 지방의회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바, 시행령에 따라 제도의 질질적 효과가 결정될 것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임용절차 등을 규정 					
구 분	내 용	특 징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법률상 용어로, 직위 명칭으로 부적절한 바, 법률 용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으로 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중 정책적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특성 반영			
직무범위	<p>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p> <p>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p> <p>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하는 의정활동의 범위 열거 -법 제47조(지방의회의원 의결사항), 제48조(서류제출 요구)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 제52조(의회규칙) -개인보좌관과 방지를 위해 열거한 직무 외의 사적 사무 지원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 			
배치형태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사무기구 유형, 위원회 유무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배치			
임용절차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종류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의 임용절차 등을 적용 - (직급)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규정 -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지원이라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무인력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규정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2. 지방자치법의 개정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2 | 지방의회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참고) 지방의회 '책임 강화'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의 규정 변화_의원겸직금지

현 행	개 정	주요변화
<p>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중략)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일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 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중략)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 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일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일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일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홈페 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 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중략)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 단체 범위의 의미 명확히 규정, 인터넷 공개 - 겸직관련 사항 위반시 의회의장은 사임할 것을 권고 (의무조항)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2. 지방자치법의 개정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2 | 지방의회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참고) 지방의회 '책임 강화'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의 규정 변화

구 분	현 행	개 정	주요변화
지방의회 윤리심사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미규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의정활동 투명성	미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표결 방식 규정

2. 지방자치법의 개정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3 | 개정 지방자치법의 평가

1)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평가

- 2021. 1. 12.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으로서 실효적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음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마다의 특성과 자율성이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전대우, 2021: 36)
- 지방의회와 관련된 직·간접적 제도개선 노력은 그간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미진했던 부문들에 대한 협장의 요구사항을 중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개정 지방자치법은 그간 지방의회 협장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확립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실효적인 지방의회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디딤돌이 될 것임
- 다만,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전면적인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한계를 노정,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인사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 지방자치 2.0 시대 대비

2. 지방자치법의 개정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II.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

3 | 개정 지방자치법의 평가

2)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5개의 사항을 조례 등에 위임함으로써 종전 지방의회 운영의 획일적 사항을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 이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 기대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여비 제외(제40조)
 - 비회기 중상해·사망보장금 지급기준 완화(제42조)
 -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제53조, 제54조)
 - 의안발의 요건의 자율성 강화(제76조)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전문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수행 기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

3) 지방의회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기존 제도상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회의공개원칙만 규정할 뿐, 의회와 의정활동에 관한 공개 규정 부재, 윤리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재량사항이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징계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
- 이에 개정 지방자치법은 윤리심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병행 지방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의 폭넓은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김건위, 2021: 31)

III.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증 분석

1. 의정활동 성과 기준

2. 의정활동 평가

1. 의정활동 성과 기준

1 | 선행연구

연구자	의정기능	측정지표
권영주(2009)	입법	- 평균 조례처리건수, 지방의회 발의 조례안 비율, 조례안 수정발의비율, 연평균 등의 및 승인수
	예산	- 연평균 예산안 심의수, 예산안 수정가결 비율
	통제	- 연평균 감사대상기관수, 연평균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연평균 감사자료 요구건수, 연평균 의견 청취수
	주민대표	- 연평균 청원 접수 건수, 청원채택비율
최근열·장영두(2009)	정책결정	- 조례 제·개정,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행정통제	- 예·결산안 심의활동과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문, 서면질문
	정치적대표	- 민원 수령 및 해결
이영희·이영균(2010)	입법 및 의결	- 시의회 안건처리 상황, 조례안 처리 실적
	주민대표	- 주민지도, 연도별 청원, 진정, 탄원 건수
	견제·감시	-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 예·결산 처리 건수
박진우·정재진(2011)	입법	- 의원 발의 조례 수/전체 발의 조례 수, 의원 발의 조례 수/의원 수, 의원 발의 조례의 가결수/전체 가결된 조례 수
	예산심의 및 의결	- 예산 심의·의결 수/의원 수, 수정 가결 된 예산 수/전체 심의 예산 수
	견제	- 시정 질의 수/의원 수, 감사 및 조사 수/의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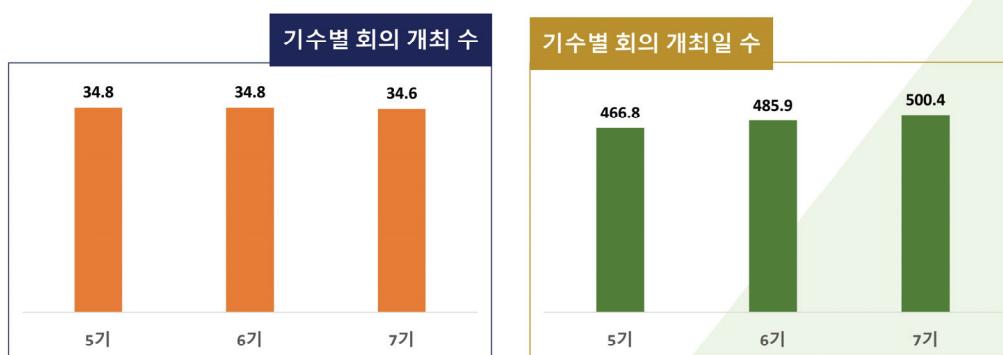
1. 의정활동 성과 기준

2 | 이 연구에서의 측정 기준

의정기능	측정지표	자료 출처
회기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수 및 회기 일수	지방의회 백서
의안처리 실적	조례, 예·결산, 재산 취득·처분, 청원, 심사, 건의, 성명, 결의, 기타	지방의회 백서
기능별 실적	대표기능	청원 및 진정건수 / 의원 수
	견제 및 감시기능	감사·조사·시정 질의 건수 / 의원 수
	입법기능	조례 가결(수정가결) 건수 / 의원 수
	동의 수정안 가결	동의 및 수정안 가결(수정가결)건수 / 의원 수
	예산 결산 가결	예산·결산 가결(수정가결) 건수 / 의원 수

2. 의정활동 평가

1 | 회기 운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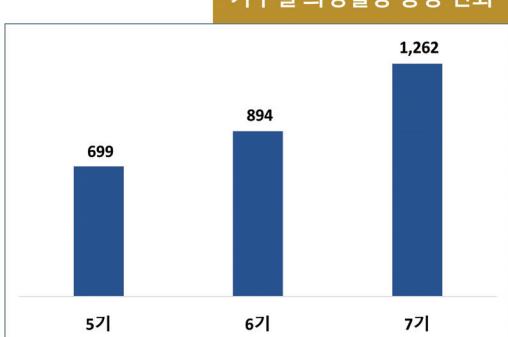
- 회의 개최 건 수는 기수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회의 개최일수는 기수별로 점진적 상향 추세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구조적 개선점 도출 필요

III.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증 분석

2. 의정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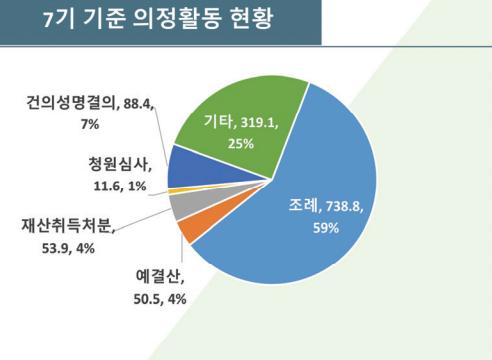
2 | 의안 처리 실적

기수별 의정활동 총량 변화



기수	총량
5기	699
6기	894
7기	1,262

7기 기준 의정활동 현황



분류	수	비중
조례	738.8	59%
예산	50.5	4%
재산취득처분	53.9	4%
청원심사	11.6	1%
건의성명결의	88.4	7%
기타	319.1	25%

- 조례, 예산, 재산취득, 청원심사, 건의, 성명 등 의안처리 및 활동 실적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조례안 처리 실적이 월등히 커, 의회의 입법기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III.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증 분석

2. 의정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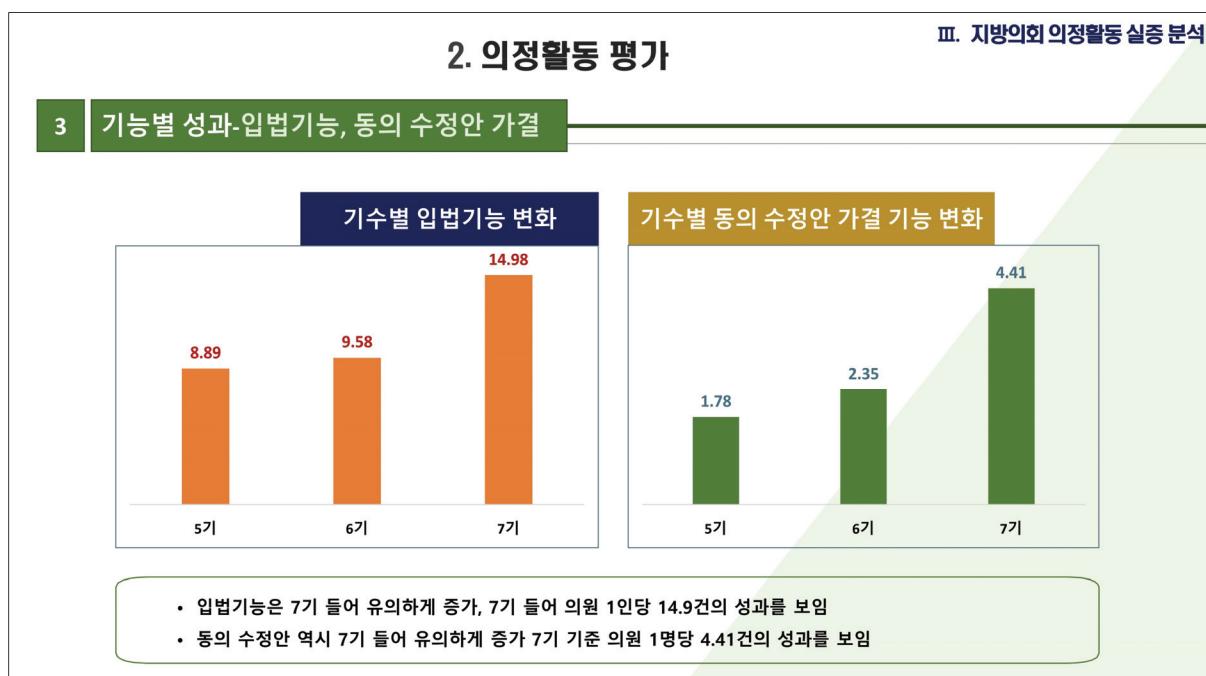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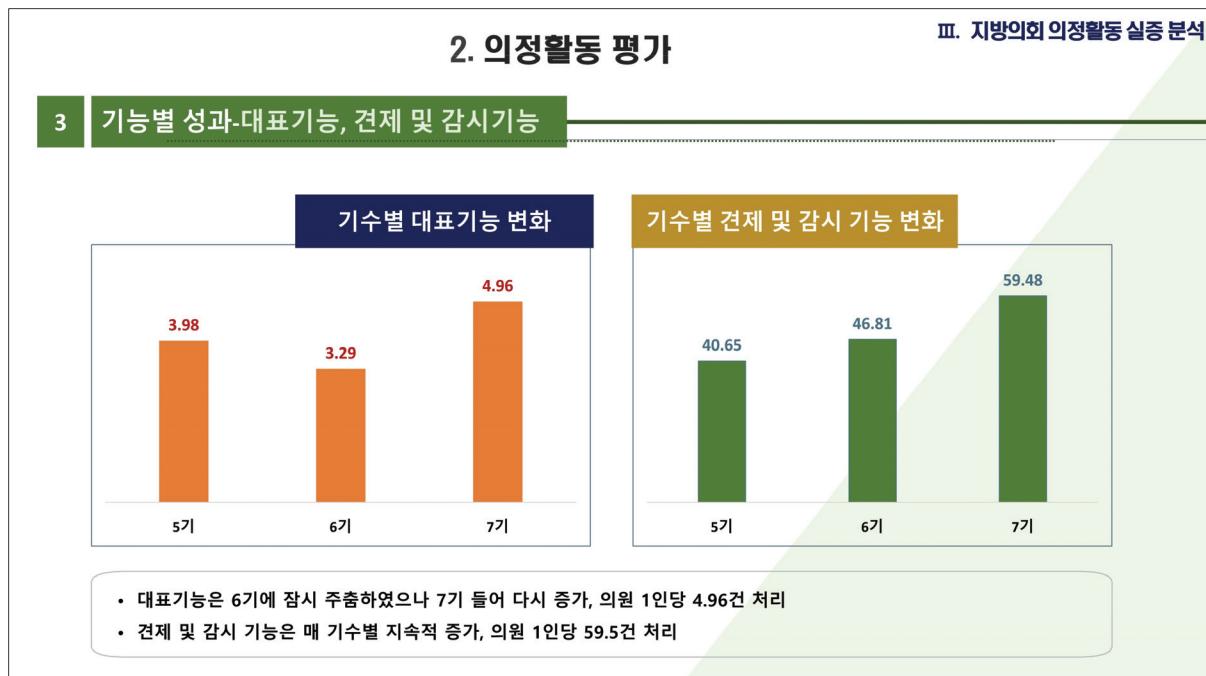
2 | 의안 처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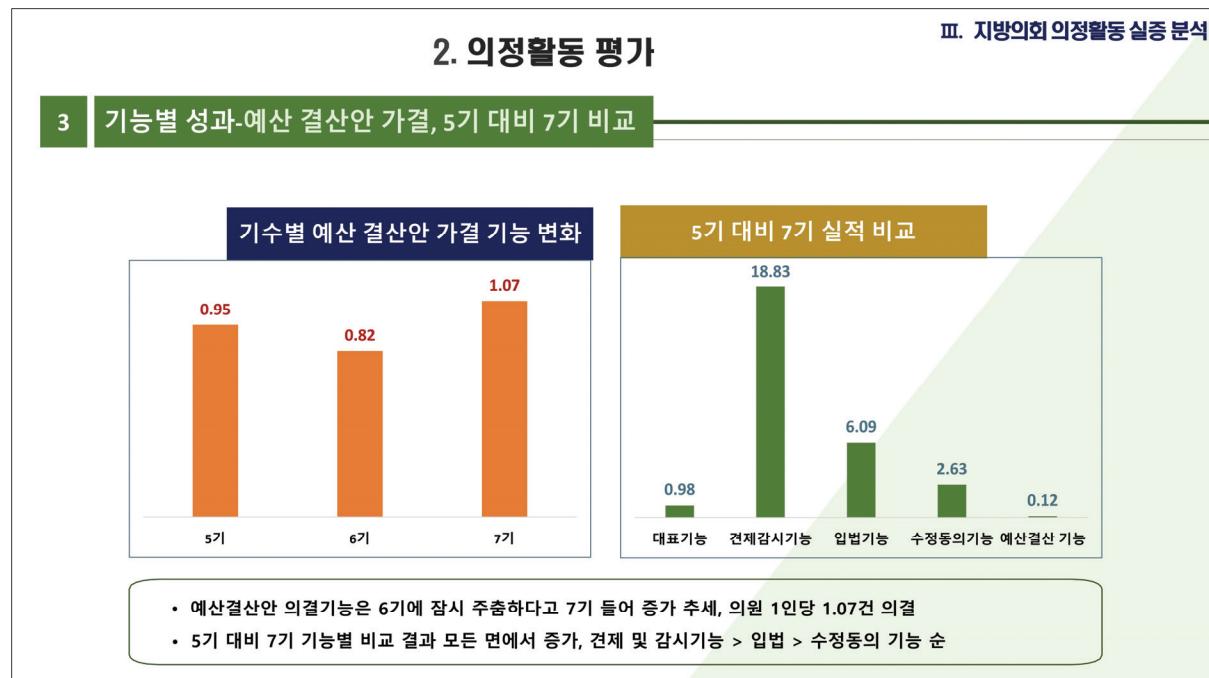
5기 대비 7기 의정활동 부문별 실적 변화



부문	5기	7기
조례	346	346
예산	11	11
재산취득처분	35	35
청원심사	3	3
건의성명결의	44	44
기타	125	125

- 의정활동 전체 부문에서 5기 대비 7기의 성과가 증가되고 있으며
- 특히 대의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의회의 가장 기본 사무라 할 수 있는 조례 부분의 증가가 월등히 크다는 것은 지방 의회의 역할에 대한 충실했성이 높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입법을 위한 전문인력의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III.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증 분석

2. 의정활동 평가

4 | 지방의회 활동 실적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5기와 6기 대응	대표기능	1.0631	2.5337	1.6784	0.114
	경제감시기능	-7.4525	14.7037	-2.0274	0.061
	입법기능	0.2344	2.1805	0.4299	0.673
	수정동의	-0.5769	0.9818	-2.3502	0.033
	예결산 의결	0.2131	0.1805	4.7228	0.000
6기와 7기 대응	대표기능	-1.7888	3.5075	-2.1028	0.052
	경제감시기능	-12.2835	14.7658	-3.4300	0.003
	입법기능	-6.7635	5.0271	-5.5473	0.000
	수정동의	-2.7124	2.3134	-4.8342	0.000
	예결산 의결	-0.3759	0.4319	-3.5880	0.002
5기와 7기 대응	대표기능	-0.5250	4.2893	-0.4896	0.631
	경제감시기능	-20.2913	19.2607	-4.2140	0.001
	입법기능	-5.8600	3.3160	-7.0688	0.000
	수정동의	-2.8713	2.1058	-5.4540	0.000
	예결산 의결	-0.0825	0.3717	-0.8878	0.388

2. 의정활동 평가

III.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증 분석

5 | 지방의회 활동 실적 종합

- 지방의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임시회와 정례회 등 회기일수도 매 기수가 변화되면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의안처리 실적도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1인당 실적 추세를 살펴보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임
-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능이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남
 - 5기 대비 6기 : 수정 동의, 예결산 의결 기능의 통계적 유의성 인정
 - 6기 대비 7기 : 견제 감시, 입법, 수정동의, 예결산 의결 기능의 통계적 유의성 인정
 - 5기 대비 7기 : 견제감시, 입법, 수정동의 기능의 통계적 유의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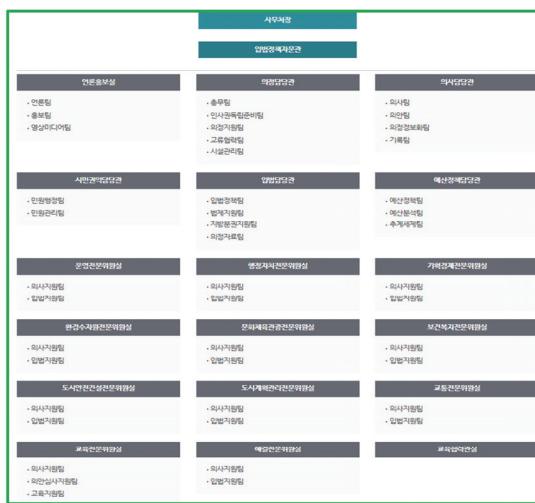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1. 의정지원 조직 현황
2. 의정지원 기능 분석
3. 의정기능의 국회와 비교
4. 의정기능 실태 종합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1. 의정지원 조직 현황

1 조직 현황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1. 의정지원 조직 현황

2 조직 현황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발표 2]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진단 필요성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2. 의정지원 기능 분석

1 | 상임위원회 및 담당관(실)

기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상임위	10	7	7	6	5	5	5	4
담당관	6	4	3	3	3	3	2	2

기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임위	13	6	6	7	6	7	7	7	7
담당관	7	4	3	5	3	3	3	3	4

전국 시·도의회는 17처장, 115개 전문위원실, 61개 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의 전국평균은 각각 6.76개와 3.59개임

- 입법과 예산정책을 전담하는 담당관(실)을 모두 두고 있는 의회는 서울, 경기도 및 충남도 등 3개 의회임
- 대구, 전북, 경남의회 등 3개 의회는 “입법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경북·제주 등 9개 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제주는 정책입법담당관)을 두고 있음
- 세종시의회는 의사·기록업무와 입법지원을 담당하는 “의사입법담당관”을 두고 있고 전남도의회는 “정책담당관”을 두고 있음
- 서울(언론홍보실), 부산(홍보담당관), 대구(홍보담당관), 광주(홍보소통담당관), 경기(언론홍보담당관), 강원(홍보담당관), 충남(홍보담당관), 제주(공보관) 등 8개 시·도의회는 별도의 독립된 홍보 및 언론담당 기구를 두고 있음
- 서울, 경기는 주민의 민원을 접수·관리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고 있음

[발표 2]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진단 필요성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2. 의정지원 기능 분석

1 | 상임위원회 및 담당관(실)

7기 후반기	의원정수	상임위원회수
서울	106	10
부산	47	7
대구	30	6
인천	35	6
광주	22	5
대전	22	5
울산	22	5
세종	15	4
경기	128	11
강원	44	6
충북	31	6
충남	40	6
전북	39	6
전남	58	7
경북	60	7
경남	55	7
제주	41	7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2. 의정지원 기능 분석

2 | 직원 현황

의회	의원수	의원1인당 직원수	총계	정원내				정원외					
				소계	일반	별정	일반 임기	소계	시간 선택	교육	실무원	공무직	기타
총계	829	3.18	2,634	2,012	1,609	69	334	622	230	136	6	183	67
서울	110	3.82	420	343	206	9	128	77	52	9	-	10	6
부산	47	2.89	136	122	105	-	17	14	-	-	-	14	-
대구	30	3.67	110	91	70	9	12	19	4	7	-	8	-
인천	37	3.95	146	103	98	3	2	43	21	11	-	11	-
광주	23	4.39	101	71	58	2	11	30	16	5	-	9	-
대전	22	4.73	104	86	66	9	11	18	-	9	1	8	-
울산	22	3.45	76	64	54	2	8	12	1	6	-	5	-
세종	18	3.89	70	45	43	1	1	25	13	6	1	5	-
경기	142	2.71	385	267	192	6	69	118	64	21	-	17	16
강원	46	2.43	112	90	85	1	4	22	2	9	4	-	7
충북	32	2.94	94	78	75	1	2	16	5	9	-	2	-
충남	42	3.14	132	88	80	1	7	44	21	14	-	6	3
전북	39	3.26	127	97	90	3	4	30	-	9	-	15	6
전남	58	2.59	150	104	96	8	-	46	16	8	-	22	-
경북	60	2.38	143	117	99	1	17	26	6	6	-	10	4
경남	58	2.50	145	116	92	10	14	29	-	-	-	17	12
제주	43	4.26	183	130	100	3	27	53	9	7	-	24	13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2. 의정지원 기능 분석

2 | 직원 현황

- 2021년 1월 1일 기준, 17개 시·도의회는 총 2,634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직원의 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420명의 서울시 의회이며, 가장 적은 의회는 70명의 세종시 의회임
 - 시·도의회 직원 수의 전국 평균은 154.94명으로 직원의 수가 전국평균 이상인 의회는 서울, 경기, 제주도 의회임
- 의원 1인당 직원 수는 전국평균 3.18명으로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전국 평균 보다 적은 의회는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의회임
 -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의원 1인당 4.73명인 대전시 의회이며, 가장 적은 의회는 의원 1인당 2.38명인 경북도의회임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2. 의정지원 기능 분석

3 | 기능 현황

의회	총 계	총무·의사		입법·예산		대민·언론		전문위원회		교섭단체지원	
		명	%	명	%	명	%	명	%	명	%
총계	2,634	1,071	40.66	316	12.00	211	8.01	1,013	38.46	23	0.87
서울	420	144	34.29	38	9.05	39	9.29	199	47.38	0	0.00
부산	136	51	37.50	6	4.41	17	12.50	62	45.59	0	0.00
대구	110	43	39.09	12	10.91	15	13.64	40	36.36	0	0.00
인천	146	63	43.15	14	9.59	0	0.00	69	47.26	0	0.00
광주	101	37	36.63	12	11.88	11	10.89	41	40.59	0	0.00
대전	104	55	52.88	15	14.42	0	0.00	34	32.69	0	0.00
울산	76	41	53.95	7	9.21	0	0.00	28	36.84	0	0.00
세종	70	23	32.86	17	24.29	0	0.00	30	42.86	0	0.00
경기	385	117	30.39	39	10.13	89	23.12	117	30.39	23	5.97
강원	112	54	48.21	10	8.93	12	10.71	36	32.14	0	0.00
충북	94	47	50.00	12	12.77	0	0.00	35	37.23	0	0.00
충남	132	41	31.06	34	25.76	13	9.85	44	33.33	0	0.00
전북	127	56	44.09	12	9.45	0	0.00	59	46.46	0	0.00
전남	150	63	42.00	19	12.67	0	0.00	68	45.33	0	0.00
경북	143	68	47.55	32	22.38	0	0.00	43	30.07	0	0.00
경남	145	81	55.86	26	17.93	0	0.00	38	26.21	0	0.00
제주	183	87	47.54	11	6.01	15	8.20	70	38.25	0	0.00

2. 의정지원 기능 분석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3 기능 현황

■ 총무·의사기구

- 총무·의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전체 시·도의회 직원 2,634명의 40.66%인 1,071명으로 2019년의 44.11%에 비해 3.45%p 낮아졌음
- 총무·의사 담당관 소속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의회는 55.86%인 경남도 의회이며, 비율이 가장 낮은 의회는 30.39%의 경기도 의회임
- 총무·의사 담당관 소속 직원의 비율이 50%이상인 의회는 대전·울산·충북·경남 등 4개의회임

■ 대민·언론기구

- 대민·언론담당기구 소속 직원은 전체 시·도의회 직원 중 8.01%인 211명으로 2019년 대비 0.43%p 낮아졌음
- 전체 시·도의회 중 대민·언론담당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의회는 23.12%의 경기도 의회이며, 경기도 의회를 제외하면 13.64%의 대구시 의회가 가장 높음

■ 입법·예산정책지원기구

- 시·도의회의원의 입법·예산관련 의정업무를 의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는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전문위원회이며 이 세 개의 기구에 소속된 인력은 전체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50.46%인 1,329명임
- 시·도의회 전체 직원 중 입법담당기구 소속 직원의 비중은 10.21%, 예산정책담당기구 소속 직원의 비중은 1.78%, 전문위원회 소속 직원의 비중은 38.46%임
- 입법·예산지원기구 소속 인력 중 입법담당기구 소속 직원의 비중은 20.24%, 예산정책지원기구 소속 직원의 비중은 3.54%, 전문위원회 소속 직원의 비중은 76.22%임

3. 의정기능의 국회와 비교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1 시·도의회와 국회간 지위의 비교

지위	국회	지방의회
대표기관	국민에 기반 국정 담당	주민에 기반 지역정책 담당
입법기관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 폐지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개정, 폐지
통제기관	행정부와 사법부의 국정 수행 감시·견제·통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감시·통제
최고기관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우위성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우위성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3. 의정기능의 국회와 비교

2 시·도의회와 국회간 권한 비교

국회		지방의회	
권한	주요 내용	권한	주요 내용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 전 지역과 모든 국민에게 적용	입법권	조례의 형식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만 적용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대통령, 헌법기관 선출권 가짐	선거권	결산검사위원 선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 선임 추천 요구
재정에 관한 권한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포함한 재정 입법권 가짐	자치재정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 · 벌칙을 정할 수 있음
국정 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각종 동의 및 승인권 국무총리 ·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탄핵 소추권	표명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 집행기관 등에게 법적 · 정치적 효력이 있는 의견 표명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3. 의정기능의 국회와 비교

3 광역의원과 국회의원 특권 비교

구분	국회의원	지방의원
급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보좌 직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총 8인 :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규정 없음
신분상 특권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 (현행법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없음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의원 체포 또는 구금사실,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 시 의장에게 통지
후원회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해 허용	허용되지 않음(2021.1.5. 「정치자금법」 제6조 개정,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역구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포함)

3. 의정기능의 국회와 비교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4. 국회 의정지원 제도

구분	조직차원 지원제도				개인차원 지원제도 의원 보좌진
	법제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직무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국가예산·결산·주요정책 및 사업 계획의 분석·평가와 정책대안 개발 -외국의 예산·결산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입법조사 및 연구 -입법참고 질의회답 -입법지식 DB구축·운영 -입법관련 정보제공	-법률·예산안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의사진행의 보좌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 지원 제도(정책보좌) -지역(정무)보좌 -사무보좌
지휘·감독 관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감독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	소속 국회의원의 지휘·감독
신분보장	직업공무원	직업공무원	직업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 신분보장	직업(별정직)공무원
충원과정	공개채용	공개채용	공개채용	수석전문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공개 채용	소속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임용

- 국회는 법제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전문위원 등 조직차원의 지원을 받지만 시·도의회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
- 국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함.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 임용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 효과적 견제를 하기 어려운 현실
- 지방의회의원들은 양질의 개인 보좌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4. 의정기능 실태 종합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1.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한 사무처 구성

- » 규모가 큰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와 규모가 작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제외한 14개의 시·도의회 사무처는 2~4개의 담당관과 전문위원으로 구성
- »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총무 및 의사기능을 담당하는 담당관과 필수기구인 전문위원, 입법정책부서(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실 등) 등으로 유사한 의회사무처 조직구성

2. 국회와의 비교시 지원 기능의 약화가 뚜렷

- » 국회법은 지속적으로 국회의 위상과 국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원 기능은 매우 강화
- » 국회의 의정지원시스템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 지원이 의회사무처 단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의원보좌진이라는 개인적인 보좌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국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함.
-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 임용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 이러한 규정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여야 할 시·도의회의 역할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들은 양질의 개인 보좌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IV. 의정지원 조직 및 기능분석

4. 의정기능 실태 종합

3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의 적극적 활용 필요

- » 시 · 도의회 기본조례는 상위법의 제약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 독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방의원의 역량강화가 미흡할 수밖에 없음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 · 도 그리고 시 · 군 · 구 지방의원들을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시 ·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 · 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할 것이라는 것은 시 · 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개인 및 조직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 판단됨
- » 2022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적용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가능한 기회가주어짐에 따라 구체화된 역량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

2. 조직개편안 도출을 위한 방법론

V.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1 | 연구수행 비전 체계**

-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비전 체계를 구축



V.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2 | 연구수행 방법 -총괄**

- 문헌조사**: 기존문헌 및 자료에 대한 조사와 국내 사례분석을 통해 비교분석 자료 수집
- 현장조사**: 지방의회 직원 대상 직무분석(업무량 분석), FGI 등

진단분야	대상	진단방법
제도 및 환경 분석	의회 제도 및 환경	문헌조사(필요시 전문가 자문)
유사 자치단체 사례분석	전국 광역의회	문헌조사(필요시 인터뷰 실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공무원	문헌조사, 면접조사, 조사표 조사(직무, 역량), 전문가 분석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

2 | 연구수행 방법 -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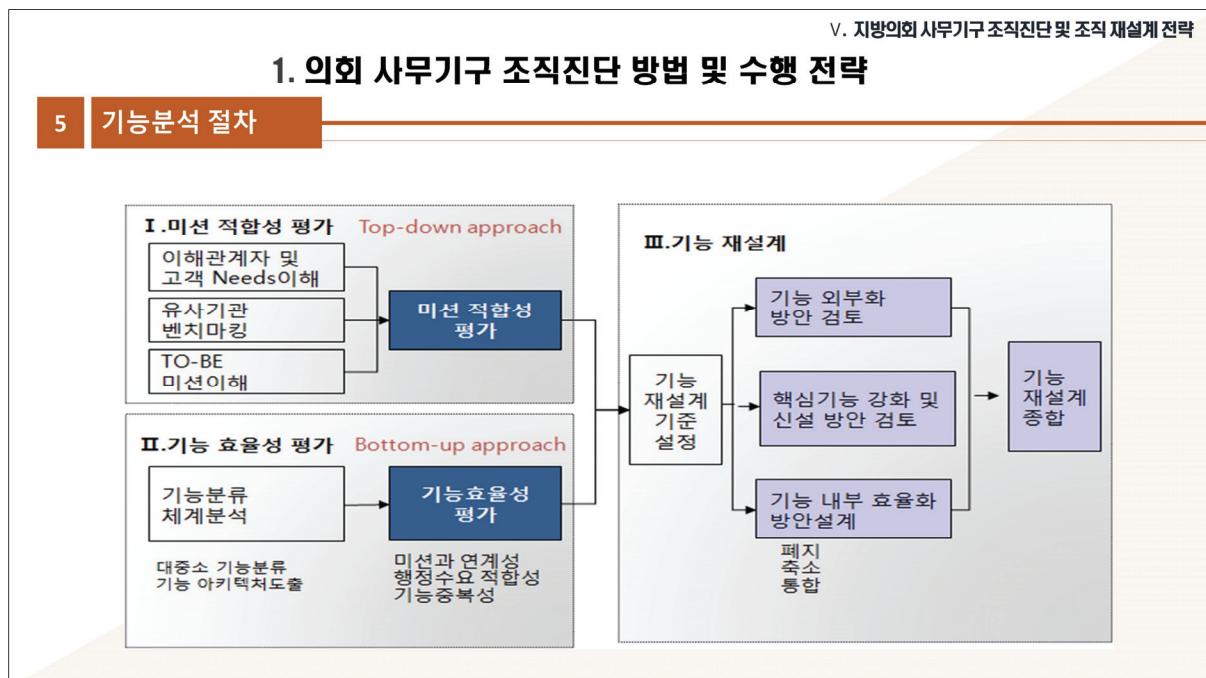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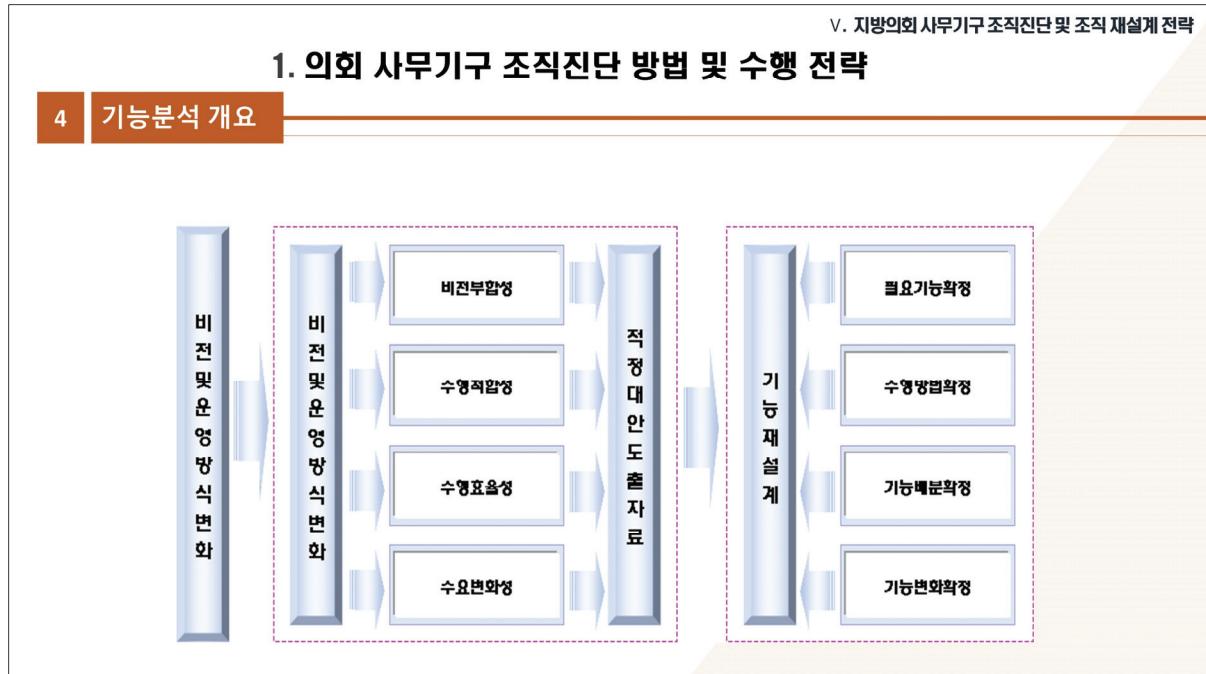
진단분야	대상	진단방법
제도분석	의회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필요시 전문가 자문) 분석
사례분석	국내 광역자치단체 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필요시 인터뷰 실시) - 시도 의회사무처, 국회의정지원조직 업무분장, 구성원 수 비교 고려하여 강화 기능 검토 - 현재 업무와 향후 업무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계 - 유사 조직 내 세부 기능간의 연계를 살피되 데이터의 확보 여부에 따라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계 - 현재 수준의 진단, 강화가 필요한 기능 등의 중점 접근 방향 검토
조직진단	기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면접조사, 조사표 조사(수요도, 적합성, 연계성, 중요성), 벤치마킹, 전문가 분석
	조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면접조사, 조사표 조사, 벤치마킹, 전문가 분석
	직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면접조사, 조사표 조사(직무, 역량), 전문가 분석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

3 | SWOT분석의 틀

		외부환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내부여력	강점(Strength)	강점-기회(SO전략)	강점-위협(ST전략)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화 • 공격전략 • 강점을 기반으로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전략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 관망 • 우회전략 • 강점을 기반으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방향
내부여력	약점(Weakness)	약점-기회(WO전략)	약점-위협(WT전략)
	강점(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배양 • 만회전략 •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가능한 활용하는 전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피 • 생존전략 •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가능한 회피하는 전략방향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

6 | 기능분석의 결과 도출

주요 기능 Matrix

Priority	High	Medium	Low
Priority 1	1, 2, 3, 4, 5, 6		
Priority 2	8, 9, 10, 13,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0, 31, 32, 33, 34	7	14, 15
Priority 3		11	12

우선고려 영역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

7 | 직무분석의 기본틀

분석목적

-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능력 및 책임 등 직무에 관한 기초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기 위해, 직무 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직무조사를 실시함

직무 분류체계

- 업무체계 분류 및 Value Chain 분석
- Value Chain, Function, Competency 접근방식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분류체계 설계

업무량 조사

- 부서별 전체 직원의 업무량 조사 및 해당직무에 대한 업무수행요건 및 경력, 역량 등을 파악
-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등

직무조사 재검토

- 직무조사결과에 대한 부서별 검토 및 피드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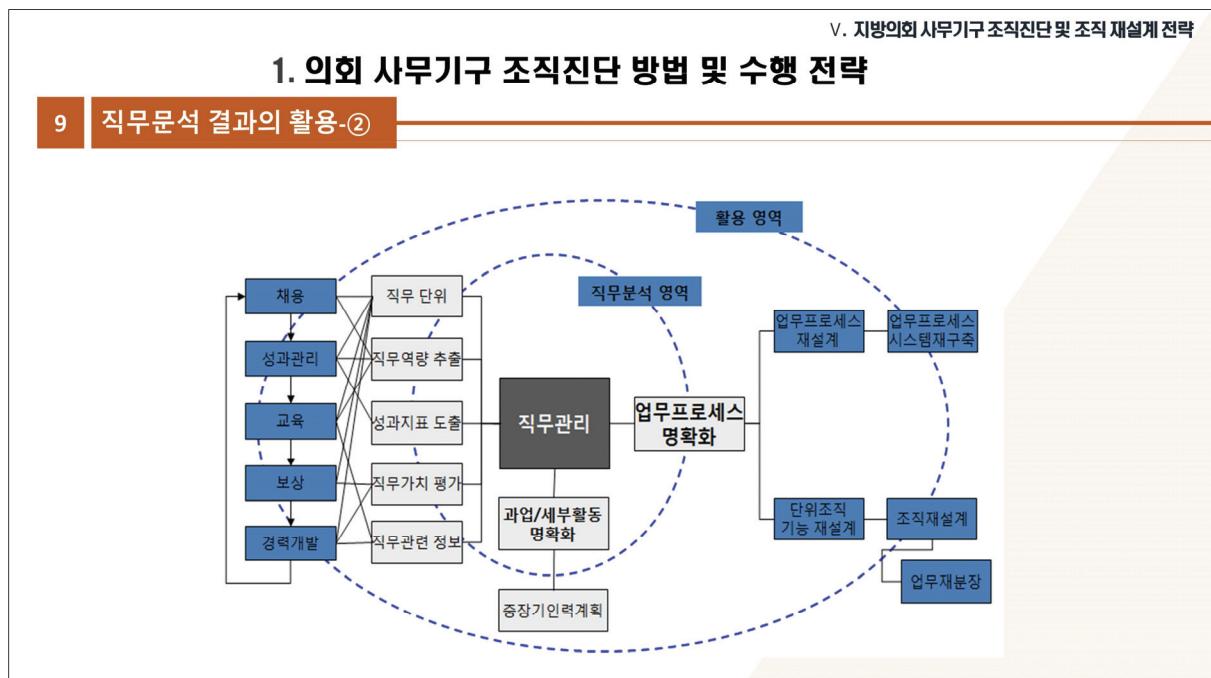
분석결과

직무분류체계

직무조사

조직 및 기능 재구축

- 부서업무분장
- 업무개선사항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10 | 직무분석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수집방법	내용(적용이 적합한 직무)	장점	단점
관찰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 기록	유체적 노동, 직무수행시간이 짧은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 용이	정신적 활동관찰 불가, 직무수행 시간이 긴 경우 곤란, 직무 수행에 대한 방해
면접법	특정 직무 수행자와 면접을 실시하여 직무에 관한 정보를 획득, 개인·집단 면접법(수행기간이 긴 직무)	수행기간이 직무의 요약 설명이 가능	면접내용의 신뢰도 문제, 집단면접시 집단 역학의 발생 가능성
설문지법	구조화된 설문지(특성대상 설문지, 표준화된 설문지)로정보획득(대부분의 직무에 사용 가능)	정보수집 시간·노력이 절약, 직무수행자의 정신적 활동 파악 가능	응답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질문지 작성의 난이도 문제
작업기록 및 결과물 분석법	직무수행자가 실제로 산출해 낸 결과물을 통해 직무정보를 수집	직무정보의 질적인 접근 용이, 수집 정보의 신뢰도가 높음	정보량의 문제(결과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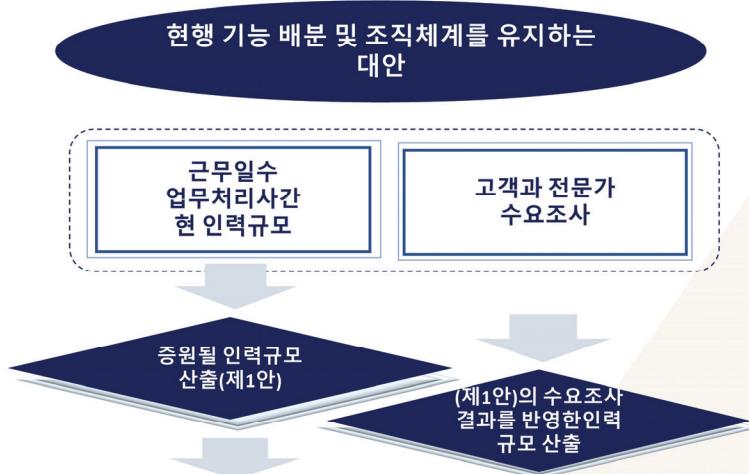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11 | 직무분석의 절차**

단계	이론적 절차	실제절차
1단계 (준비단계)	분석대상직무의 선정	전체 직무
	직무분석의 목적결정	적정인원의 산정
	조직구성원에게 직무분석의 필요성 인식	직무분석 SHEET설명회 개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 명시	인적 사항과 직무사항
2단계 (설계단계)	자료의 출처와 인원수 결정	전체 직무, 전체 의원
	자료수집방법 결정	설문지법(직접면접에 의하여 보완)
	자료분석방법 결정	Excel, SPSS, STATA 등 통계패키지 이용
3단계 (자료수집 및 분석단계)	직무요인의 특성파악	직무기술서 조사를 통해 직무의 향후 수요 파악
	자료의 수집	설문지법, 직무기술서 등
	수집된 자료의 재검토	FGI, 직접면접, 관찰법 등 활용
4단계 (결과정리단계)	자료의 분석과 종합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결과정리	직무량 파악 적정 인력 배치안 도출, 적정 조직 개편안 도출

V.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

12 | 인력분석의 기본 틀



V.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1. 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방법 및 수행 전략

13 | 업무량 산정의 방법

표준근무시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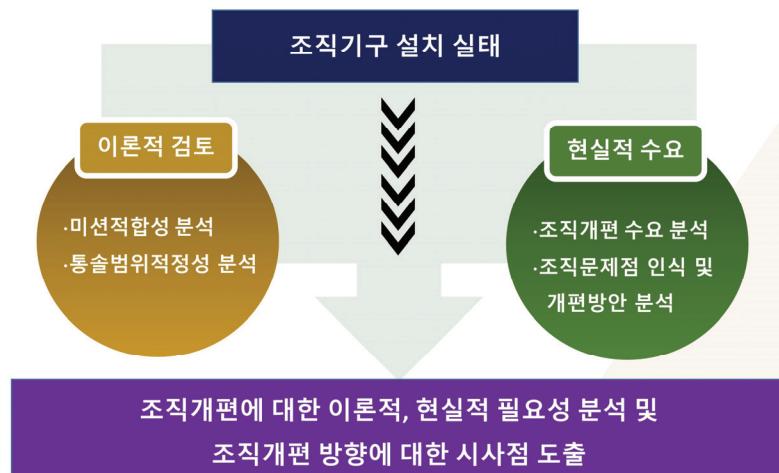
번호	구 분	표준시간
A	1년간 총 근무가능일수	365일
B	1년간 토/일요일 해당일수	(-)104 일
C	1년간 주말 제외 국 공휴일(명절, 국경일)일수	(-) 13일
D=A-B-C (또는 D=A-B)	1년간 평균적인 근무일수	248일 (또는 299일)
E=D×8시간	절대적 표준근무시간(근무일 × 법정근로시간)	1,984시간
F=D×8시간	상대적 표준근무시간(근무일 × 양구군의 평균근로시간)	1,984시간에서 + 또는 -

구성항목	E와 F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여유시간을 고려하여 총 4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		비고
여유시간	· 공통적으로 세계노동기구(ILO) 표준인 5~10% 적용		-
표준근무가능시간(E 또는 F)	MAX	· E 또는 F에 여유율이 적용된 순수 근무시간 -산식 = E 또는 F x (1 - 여유율)	자동 계산
	MIN	· MAX 표준근무가능시간의 15% 적용 -각 개인이 작성한 단위과업 업무량의 합이 최소한 MIN 표준근무가능시간을 상회 -작성시 발생 가능한 오류(시간단위 혼동 등)에 대한 방지책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2. 조직개편안의 도출을 위한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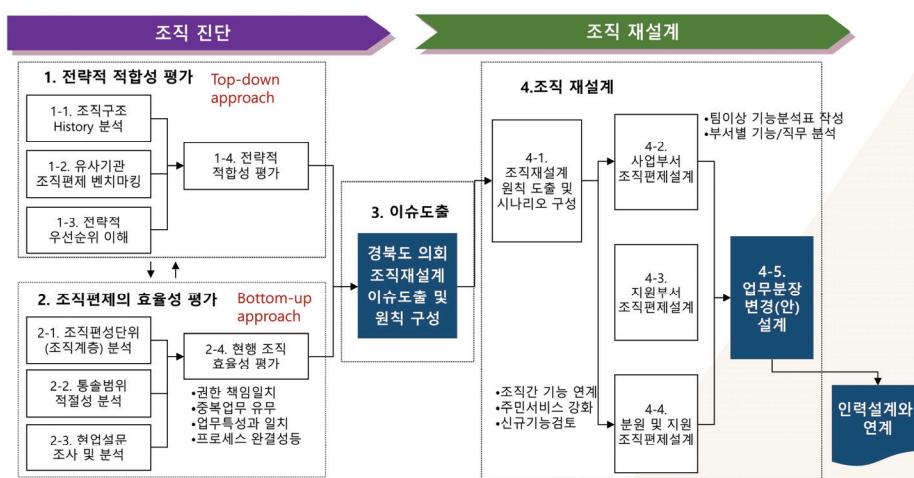
1 | 조직분석의 기본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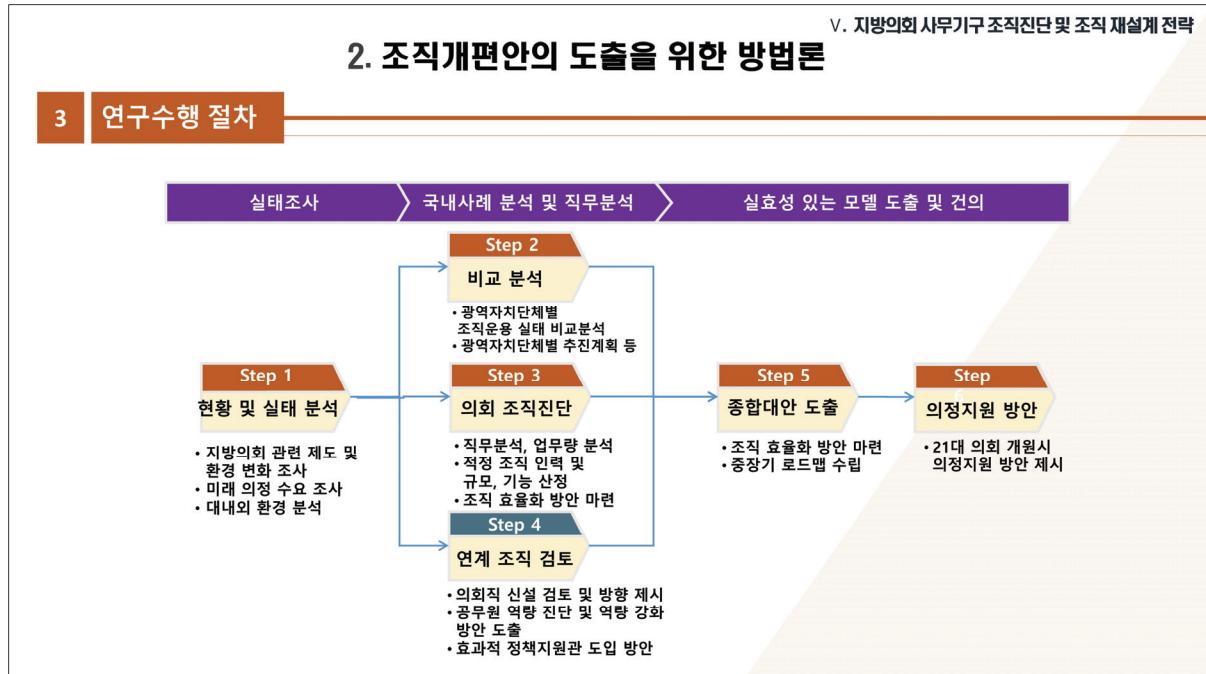


V.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전략

2. 조직개편안의 도출을 위한 방법론

2 | 조직분석의 절차





감사합니다

MEMO

MEMO

MEMO

MEMO